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사·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처분 근거 신설 등〉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65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사·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처분 근거 신설	3
2. 유실 컨테이너 보고 의무 등 신설	6
3. 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 규정 신설	11
4. 과태료 기준 신설	15
5. 부칙	18
[참고자료]	2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11.
3.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가 회수되지 않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장 등이 이를 주변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 개정안을 2024년 5월에 채택하였으며, 동 협약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작업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선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등이 용이해 졌으나, 항해당직자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주의력이 분산되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의 유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해상공사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제24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사·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처분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①·② (생략)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 ⑤ (생 략)	5. 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④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0조¹⁾는 교통안전특정해역²⁾ 안에서 해저전선 부설, 준설, 측량 등 선박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1)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항로표지 설치, 수로 측량 등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공사나 작업이 부진하여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구조물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나 작업의 허가,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1.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2.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행이 잦은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의 공사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공사 또는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3)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행정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25. 9. 15.)」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해양수산부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유실 컨테이너 보고 의무 등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와 항행 중 해상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 (생략) 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제3조(적용범위)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발생시킨 선박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u>제24조의2(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u> ①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유

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행 중 해상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관할해역 내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 게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4조⁴⁾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위험성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 그 해역을 관할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상인명안전협약) 제5장(항해의 안전) 제31규칙(위험 통보) 및 제32규칙(위험통보에 필요한 정보)이 개정⁵⁾되어 화물 컨테이너(이하 ‘컨’이라 함)를 유실한 자 뿐만 아니라 발견한 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항행장애물을 발견한 자에 대해 별도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현행법상 항행장애물 보고에 관한 규정(법 제24조)은 국제협약상 유실 ‘컨’ 보고에 관한 규정과 보고주체·보고대상 등에 있어 차

4) 「해상교통안전법」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제26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떠나거나 침몰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주는 항행장애물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수역(이하 “수역등”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및 다른 선박 등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항행장애물
- ② 대한민국선박이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 국가의 정부에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5) 2024년 5월 개정안 채택, 2026년 1월 1일 발효

이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국제협약 개정안을 현행법에 반영하기 위해 유실 ‘컨’ 보고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항행장애물과 유실 ‘컨’ 간 보고 규정 비교>

	항행장애물	유실 ‘컨’
보고주체	○ 발생시킨 자(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	○ 유실한 자(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 ○ 발견한 자(선장)
보고대상	○ 해양수산부 ○ 외국 EEZ의 경우 관할 외국 정부	○ 해양수산부, 주변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

개정안을 통하여 국내법이 국제 협약에 부합하게 작동하고, 유실되거나 표류하는 ‘컨’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주변 항행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2조제15호6)에 따르면 항행장애물은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된 물건을 의미하므로, 유실 ‘컨’ 역시 항행장애물에 해당함.

개정안은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유실 ‘컨’에 특화된 보고절차를 담은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유실 ‘컨’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6)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항행장애물”(航行障礙物)이란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선박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24조의2는 협약을 반영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선장이
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유실 ‘컨’ 주변 선박이나 인접국가를
판단하여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의무 위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결여되는 것으로 보이고, 안 제118조제3항제7호는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과기준을 적용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됨.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유실 ‘컨’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받은
선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주파수(CH16, MF/HF 통신망)
를 통해 주변 선박과 인접 연안국에 전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제시함.

- 해양수산부는 선장의 해상 유실컨테이너 등의 보고 의무 등 국
제협약 개정안을 법률에 신속히 반영하여 이행토록 하려는 취지
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박의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항해당직이나 도선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보는 행위를 제한하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이러한 사용 제한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원 등의 근무 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 (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①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항행안전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2.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영상을

	<u>보는 행위</u> <u>②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의 사용 제한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 통신기술의 발달로 선박에서도 휴대전화 등의 사용이 용이해졌으나, 현행법상 항해당직 등 수행 중 이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타 교통 분야에서는 이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나 면허 처분을 내리고 있어, 해상 교통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⁷⁾

특히, 최근 발생한 ‘퀵제누비아 2호 좌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일등항해사가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협수로 구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느라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이 지적되어⁸⁾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

7) 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 입법례는 [참고 1] 참조

8) 「항해사가 휴대폰 보다가 황…267명 ‘여객선 좌초’ 악몽 불렀다」, 중앙일보, 2025.11.20.

□ 개정안은 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선박 충돌 및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안 제40조의2제2항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118조제2항제1호의3은 관리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무배치 및 교육 등’이라는 표현은 의무 이행의 범위가 모호하여 수범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알 수 없으며, 이는 실제 단속 시 객관적인 판단 기준 부족으로 이어져 집행 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실효적인 법 집행과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법과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항해 당직이나 도선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나 영상 시청 등을 금지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부 선급법인은 국제협약⁹⁾에서 안전 항해를

위해 휴대전화 등 특정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선박 운항 환경에서 휴대전화로 업무 수행을 위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목적의 사용은 제한하되 업무 목적 사용은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경우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협약보다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안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한국해운협회는 안 제40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근무배치’나 ‘교육’의 이행 방식 등이 불명확하여 의무 이행을 위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관리·감독 방법은 선박별 실정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입장을 보임.

9)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코드(STCW Code)

4. 과태료 기준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8조(과태료) ① (생략)	제11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u>1의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u>
<신설>	<u>1의3.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 -----
8. ~ 23. (생략)	8. ~ 2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은 항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시청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70조(경계) 위반¹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임. 이는 도로(50만원)나 철도(최대 450만원)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선박 충돌 및 좌초 등 해상교통이 가진 특수성과 사고 발생 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또한, ‘컨’을 유실한 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10) 「해상교통안전법」

제70조(경계)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제24조제1항(항행장애물 보고) 위반에 대한 제재¹¹⁾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실된 ‘컨’ 역시 항행에 장애를 주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기존 제재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조치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법률 개정안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과태료 금액 상한액을 설정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11) 「해상교통안전법」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제26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제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 참고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¹²⁾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음.

- 해양수산부는 개정 법률안 이행 준비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위해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³⁾

문 의 처
02)6788-5427

1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 입법 사례(도로·철도)

- 도로·철도 분야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및 면허 처분 중
 - (도로분야)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영상표시장치에 영상 표시 및 △ 조작 금지(긴급항 상황, 지리 안내 등은 제외)
 - (과태료) 여객자동차는 50만원, 그 외에는 최대 8만원 부과(1·2·3차 위반 모두 동일)
 - (면허 처분) 여객자동차 여부와 관계 없이 벌점 15점 처분
 - (철도분야) 운행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비상상황, 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
 - (과태료) 최대 450만원 부과(1차위반 150, 2차위반 300, 3차위반 450)
 - (면허 처분) 최대 3개월 효력정지 처분(1차 경고, 2차 1개월, 3차 2개월, 4차 3개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4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차 또는 노면전차 나. 법 제49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한 차 또는 노면전차 다. 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를 위반하여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한 차 또는 노면전차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15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49조제1항제11호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며. 법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 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영상물 등을 시청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	50	50	50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터. 법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7호	150	300	450

「철도안전법」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의2.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였을 때**

- ⑤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처분대상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의2.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2	경고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3개월